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대문 제4선거구 신복자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감염병 관리 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명확한 법적 의무입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 제28조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명시한 ‘의무적 손실보상’과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위법에는 없는 ‘예산의 범위’라는 제한 요소가 부가되어, 법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습

니다.

- 이러한 현행 규정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서울시의 보상책임을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 28조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